

2024. 11.  
Vol.82

Blue*note*

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



##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sup>1)</sup>

유민상 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 요약

- 조사목적**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조사대상** ▶ 전국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 참여자 정보: 8,796명 참여 (남학생 4,536명, 여학생 4,260명; 초등학생 3,048명, 중학생 2,969명, 고등학생 2,779명; 일반계고 2,248명, 특성화계고 531명)
- 조사방법** ▶ 학교 방문 대면조사 및 일부 우편조사 병행
- 조사기간** ▶ 2023년 5월~7월 (조사주기: 1년)
- 비 고** ▶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의 주요 지표를 소개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음
  - 인권 지표 프레임워크 중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여 직접 실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지표별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몇몇 지표들은 2011년이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종단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지표 대부분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7가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 클러스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사항 중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과 인식을 묻고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문항 위주로 설계되어 있음.<sup>2) 3)</sup>
- 이번 이슈 페이퍼는 7개 클러스터 중 5개 클러스터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기재하였음.<sup>4)</sup>
  - 일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 관련 협약 인지도,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 어려움 이유
  - 폭력 및 학대: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체벌),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
  -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운동 실천율, 자살에 대한 생각 정도, 고립감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업중단 생각 여부 및 이유

2) 이 이슈 페이퍼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영역에서 주요한 지표를 제시함. 각 권리 클러스터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보고서를 참고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각 지표별 세부 사항의 확인은 본 보고서의 기초분석보고서를, 원 데이터(raw data)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지표별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유엔아동권리협약 번역문은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의 번역본을 활용하였음

## 2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협약 당사국)는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42조 (협약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 중 70.9%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대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2.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021년 20.1%, 2022년 22.4%, 2023년 22.4%로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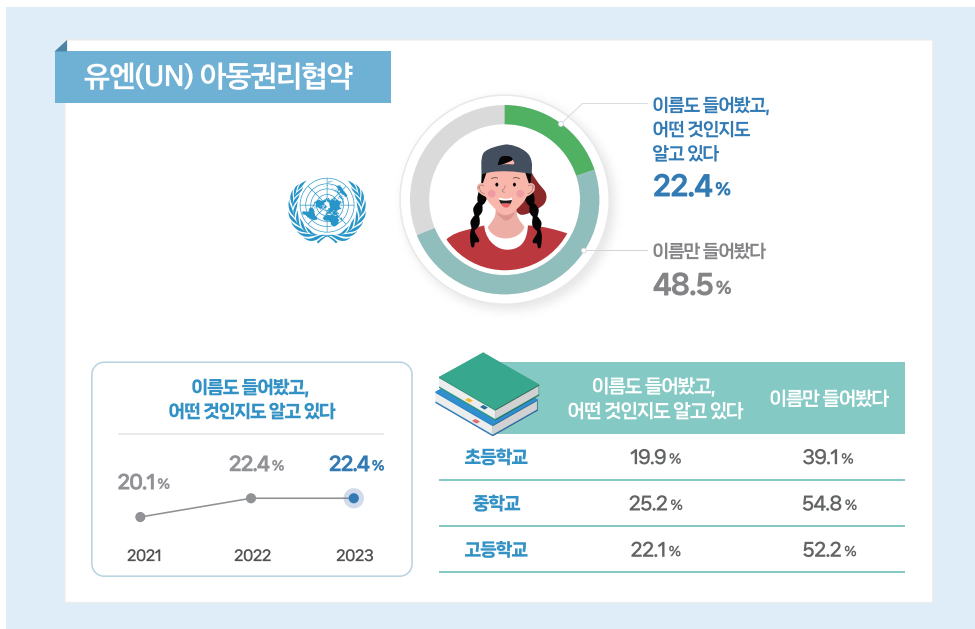


그림 1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인지도(2023)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차별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2조 (비차별)

- ①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활동, 표명된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 중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3.6%,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3.8%,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13.3%, 외모,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은 14.8%였음. 이는 최근의 조사에 비해 줄어든 수치임.
- 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 중 성차별 가해 비율은 6.8%, 학업에 따른 차별 가해 비율은 7.8%, 연령차별 가해 비율은 6.5%, 외모,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가해 비율은 9.4%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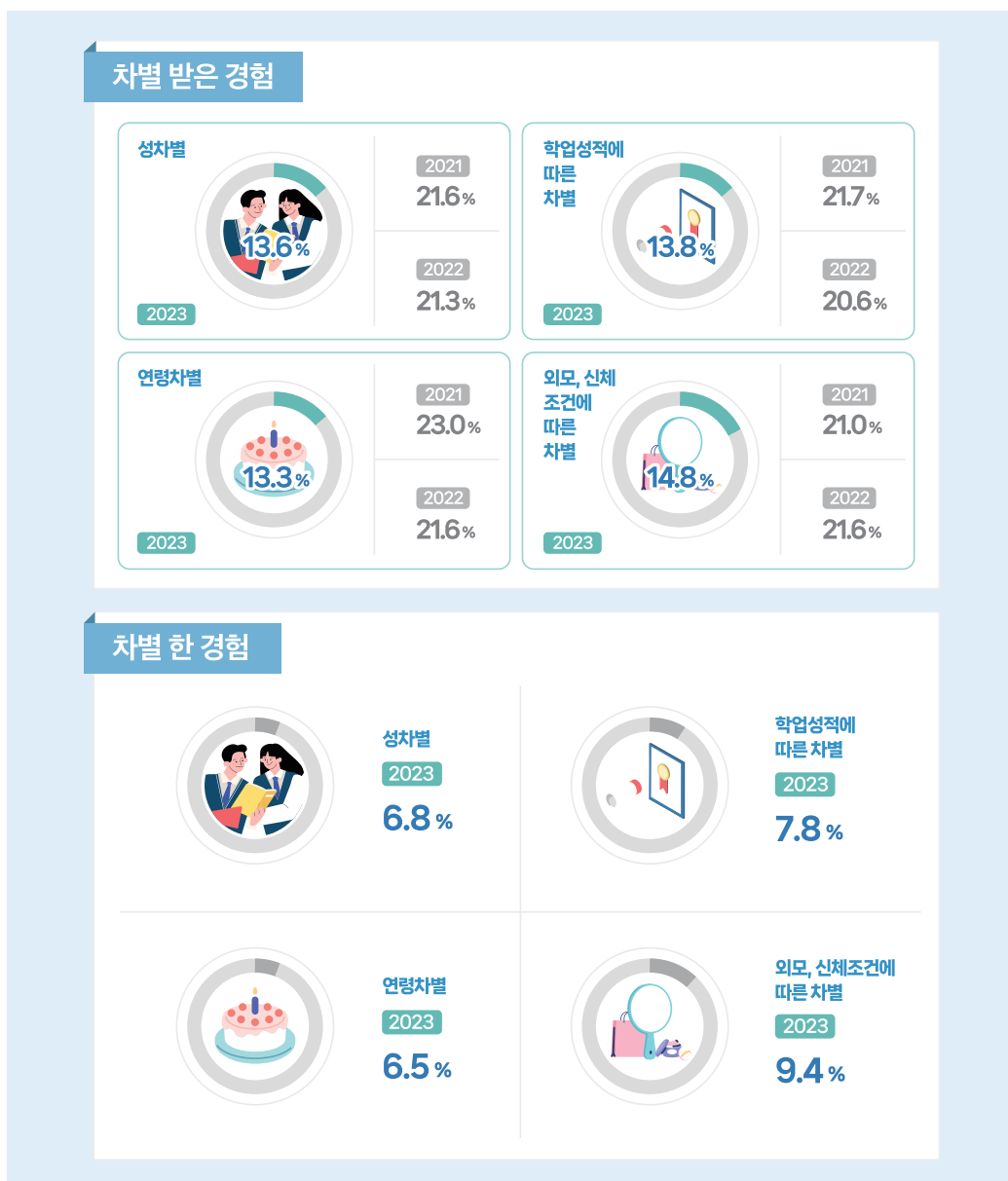


그림 2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2023)

###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본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참여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 조사하였음.

####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에게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었을 때 71.9%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응답 합산)고 응답하였음. 초등학교는 84.3%, 중학생은 71.0%, 고등학생은 59.4%가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점차 참여권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특성이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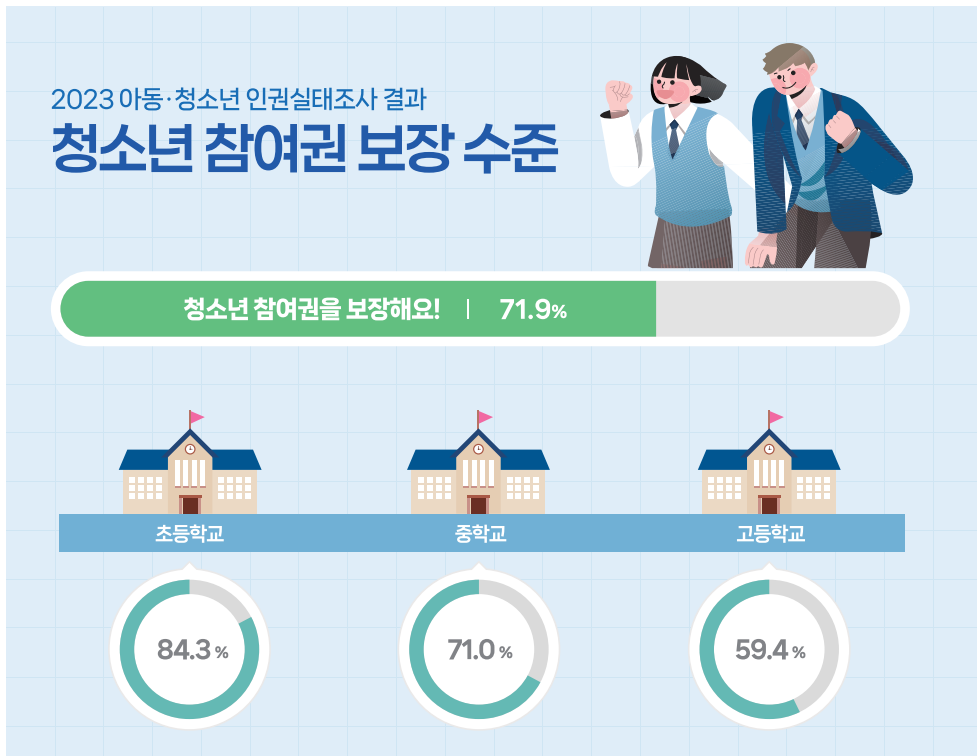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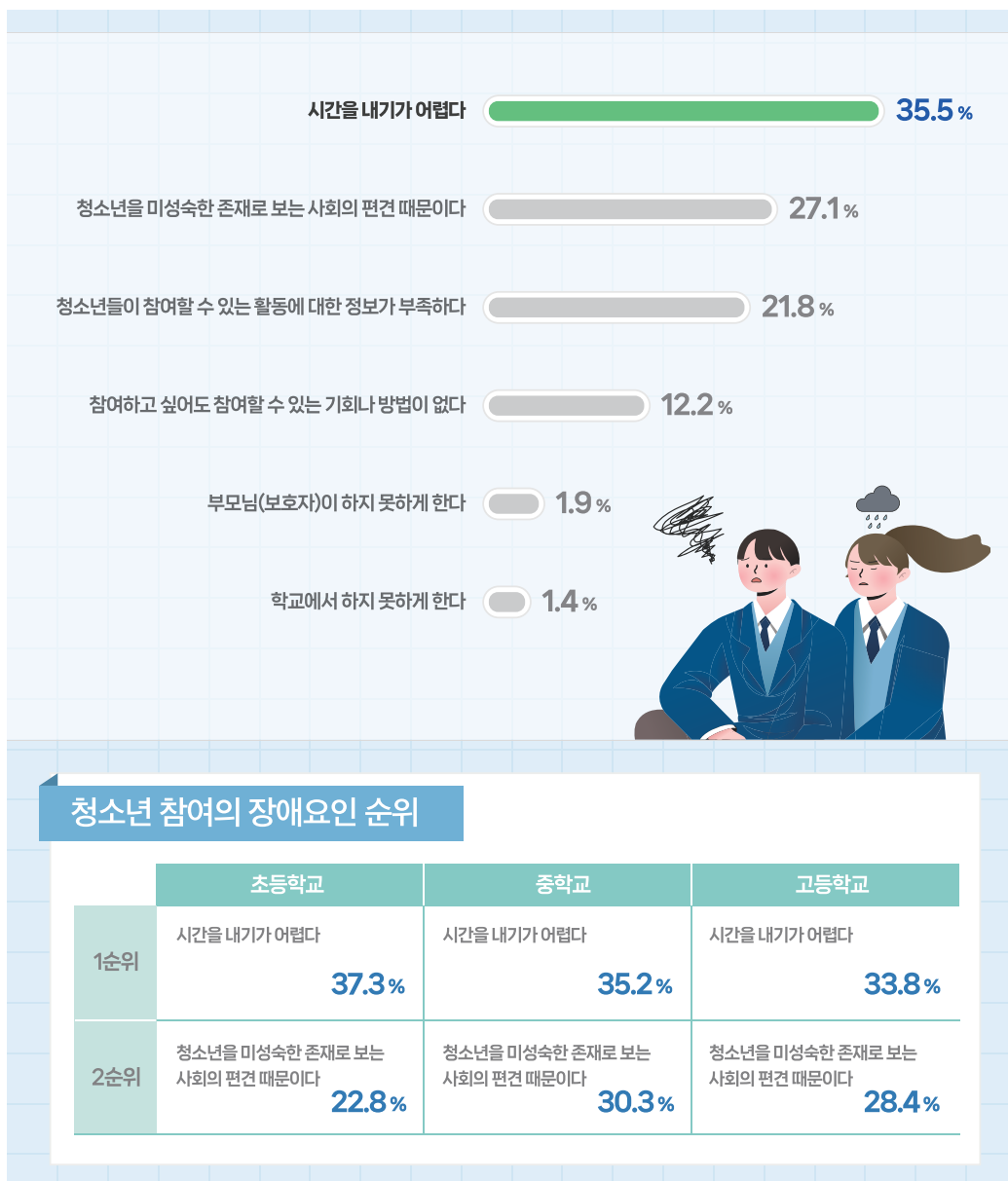


그림 4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이 어려운 이유(2023)

-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35.5%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27.1%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1.8%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음.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응답은 초, 중, 고등학교 모두에서 1순위 응답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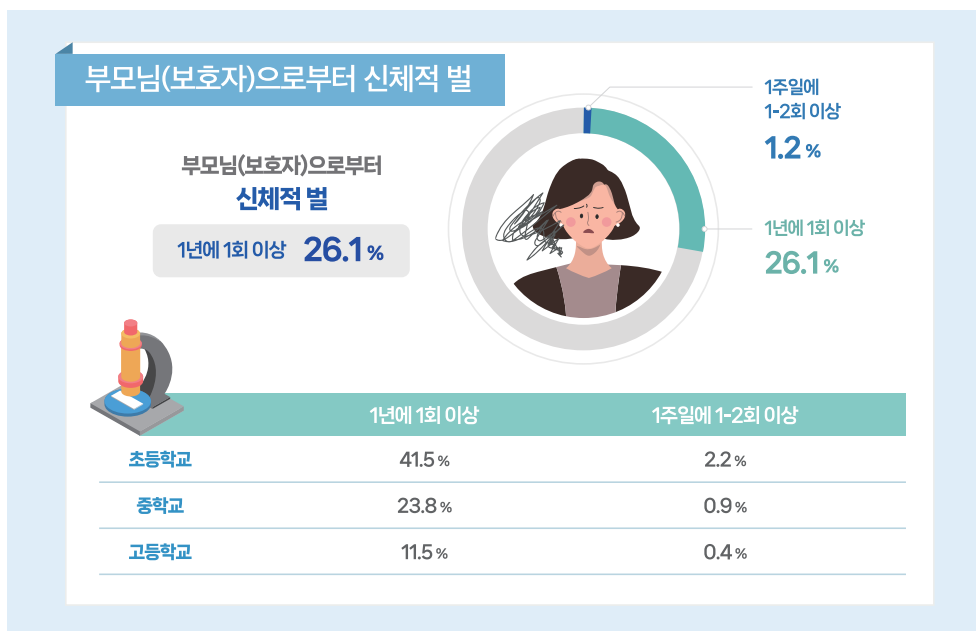
## 4 폭력 및 학대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방임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1년에 1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6.1%였음. 1주일에 1~2회 이상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2.2%, 중학생 0.9%, 고등학교 0.4%였음.
-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체벌을 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4.6%였음.
-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이 금지되었으므로 긍정적 양육법(positive discipline)의 확산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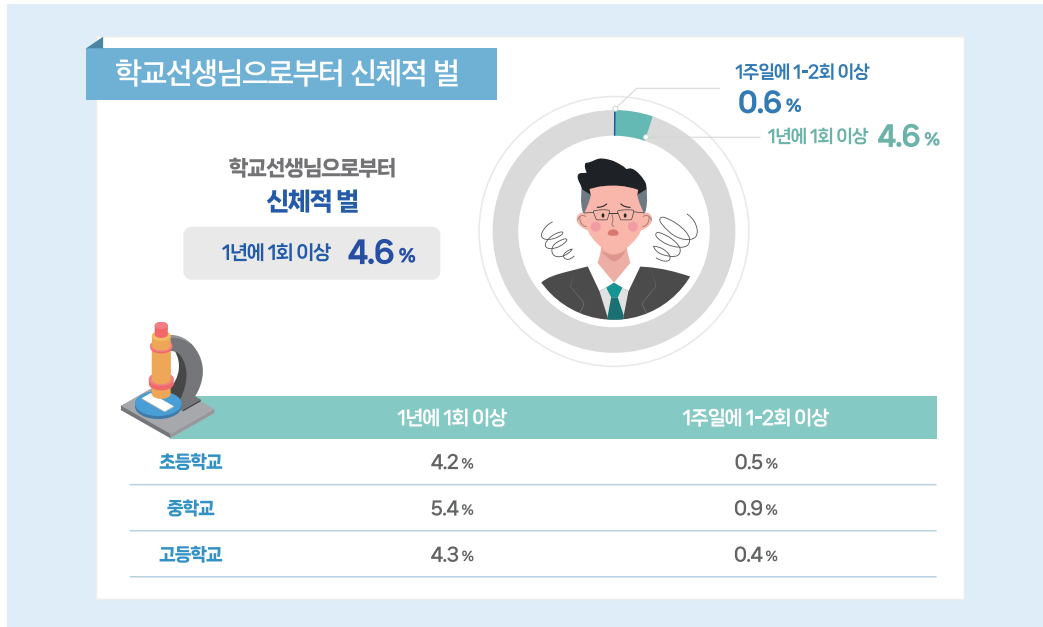


그림 5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체벌) 경험(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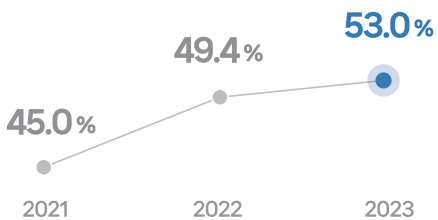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의 방임 경험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야간 방임은 53.0%이었음.
- 초중고 학생에게 범위를 넓혀서 조사했을 때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경험은 6.8%, 식사를 못해도 내버려 둔 경험은 5.0%, 자신이 아파도 부모님(보호자)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은 4.3%,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보호자)이 신경 쓰지 않는 경험은 1.4%로 나타났음.
- 사회 전체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서적 폭력과 방임에 대한 관심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경험 있어요 (1년에 1회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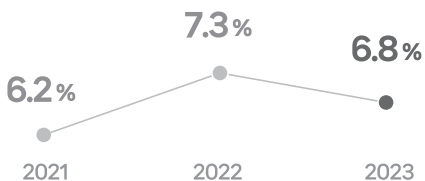
### 야간 시간 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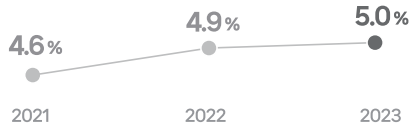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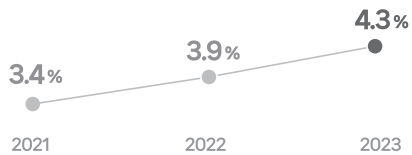
비위생적 의복,  
침구 사용



결식 시 방치



질병 무관심



결석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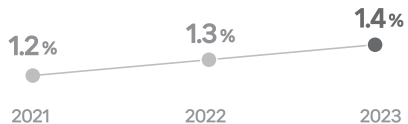


그림 6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2023)

**그림 7** 운동 실천율(2023)

■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자살과 자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비율은 31.2%로 남학생은 23.3%, 여학생은 39.5%였음.
-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학업문제 42.7%,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19.8%, 가족 간의 갈등 17.9%,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6.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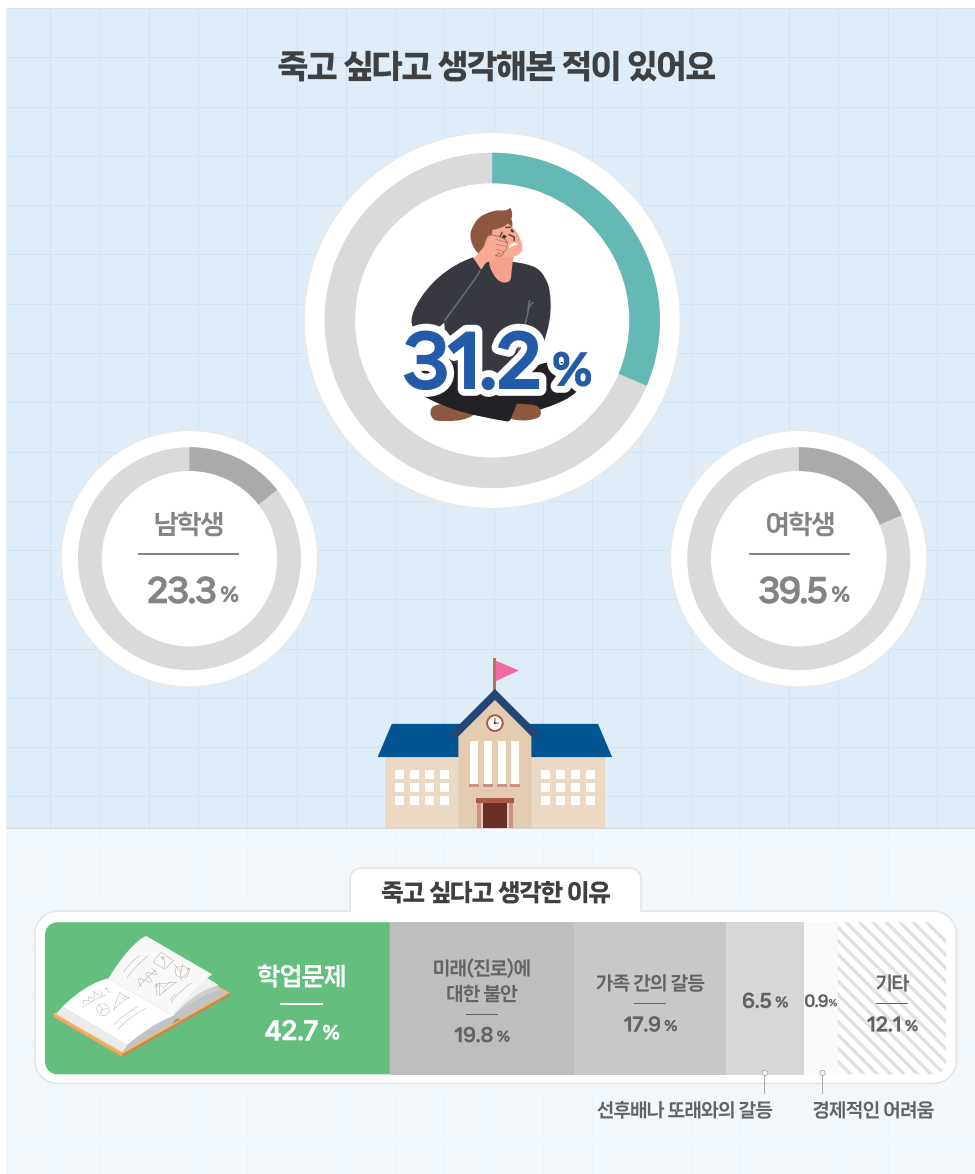


그림 8 자살에 대한 생각 정도(2023)

-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고립감(외로움)에 대해 측정하였음.
- 전체의 13.9%의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다('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응답 합산)고 응답하였음.
  - 고립감을 느낀 아동·청소년에게 그 기간에 대해 물었을 때 6개월 미만 43.6%였으나, 2년 이상 3년 미만 9.9%, 3년 이상이 15.4%로 장기적인 고립감을 느낀 아동·청소년들도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기 고립의 장기화는 전생애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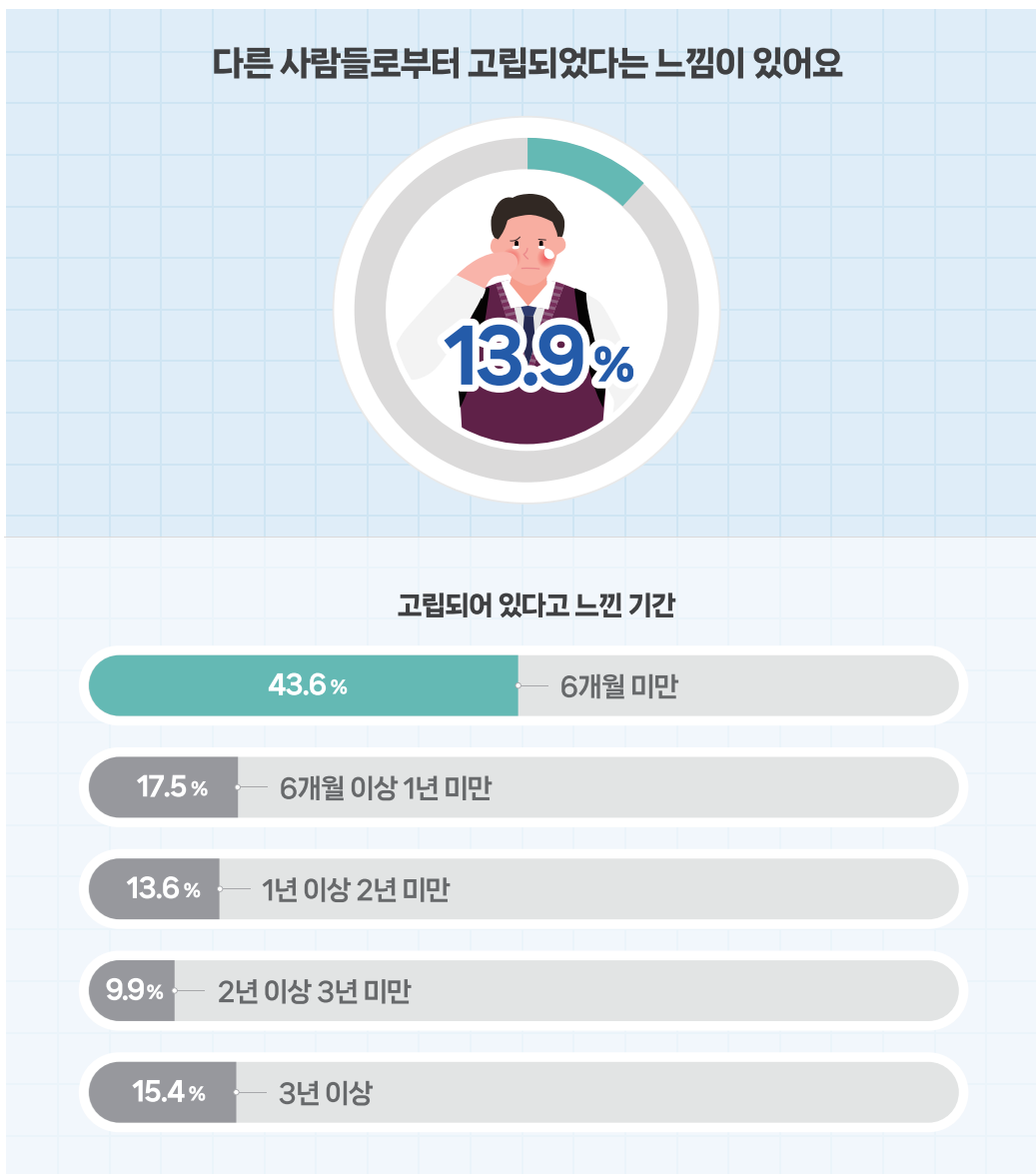


그림 9 고립감 정도 및 고립감을 느낀 기간(2023)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음.

①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일반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 도입 및 필요 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교 출석률 및 중퇴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본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29.5%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1년 25.3%, 2022년 28.8%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학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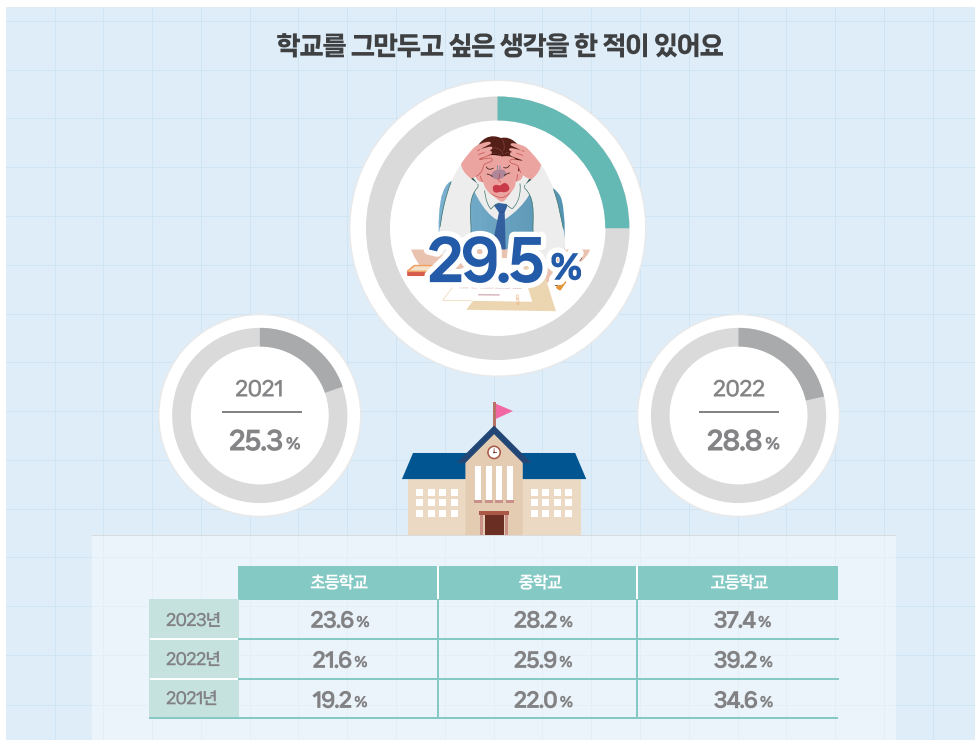


그림 10 학업중단 생각 여부(2023)

- 아동·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26.0%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로 응답하였고, 25.8%가 '공부 하기 싫어서'로 응답하였음.
  -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는 중학교(31.2%)가 고등학교(25.3%), 초등학교(20.9%)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공부하기 싫어서'는 초등학교(29.2%)가 중학교(27.0%), 고등학교(22.4%)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교 적응 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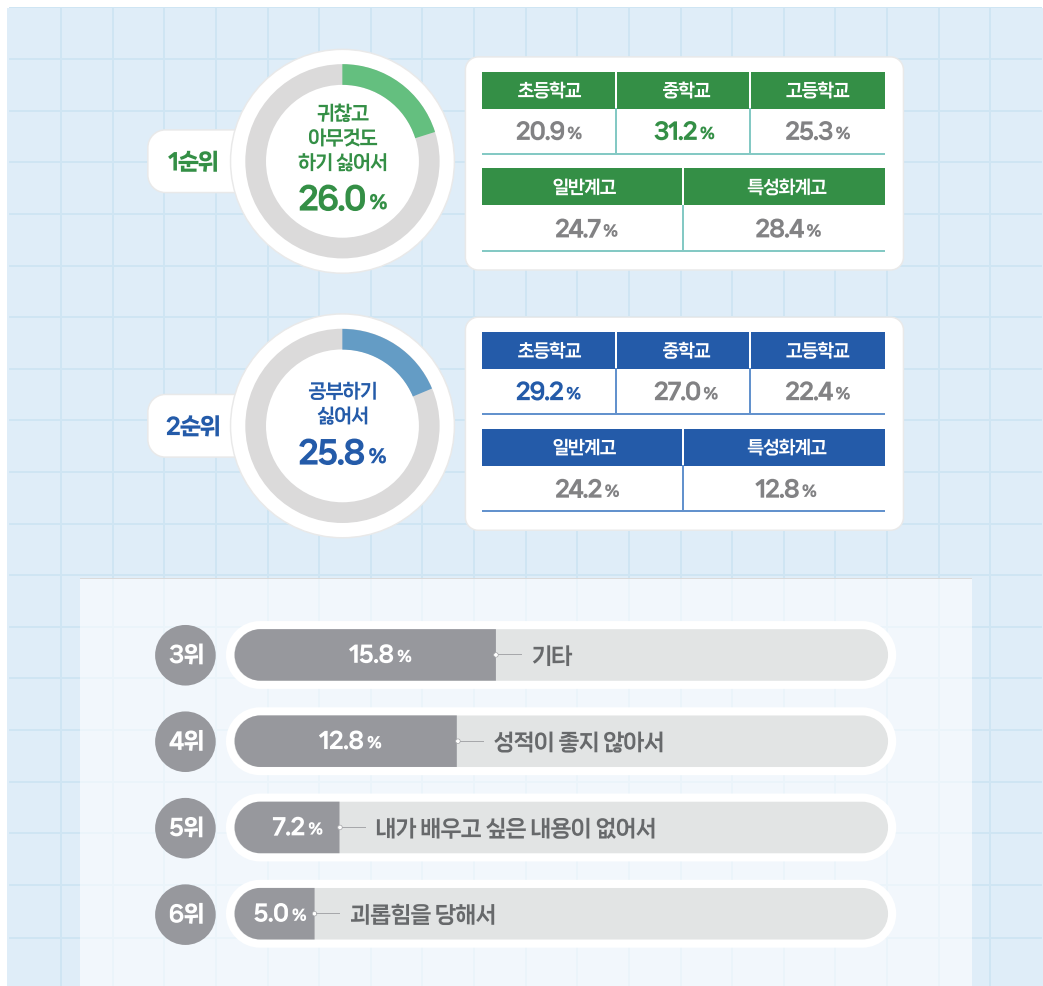


그림 11 학업중단 생각 이유(2023)